# 2022년도 유아수당제도 개정의 안내

# 2020년10월지급분부터 유아수당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 중요한 2가지의 알림입니다.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!!

- ☆특례급부지급에 관계되는 소득상한한도액이 정해졌습니다
  - ⇒소득상한한도액을 넘을 경우,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, 수급자격이 소멸됩니다.
- ☆ 현황서류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
  - ⇒매년6월에 제출하던 현황서류가 원칙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.
  - ※제출이 필요한 일부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뒷면(2) ア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<상기변경사항의 상세>

(1) 소득제한한도액 · 소득상한한도액에 관하여

2022년10월지급분부터,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분의 소득이 아래의 ②이상의 경우,유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 【수급자격소멸이 됩니다】

- ※아동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게 되어진 후에 소득이 ②를 밑돌경우,다시 인정청구서의 제출 등이 필요하므로,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아동을 양육하고 계시는 분의 소득이 아래 표의 ① (소득제한한도액) 미만의 경우, 아동수당을, 소득이 ①이상② (소득상한한도액) 미만의 경우, 법률의 원칙에 따른특례급부 (아동 1 인에 대하여 월액일률5,000엔) 을 지급합니다.

	①소득제한한도액		②소득상한한도액	
부양친족등의 명수 (괄호는 예)	소득액 (만엔)	수입액의 기준 (만엔)	소득액 (만엔)	수입액의 기준 (만엔)
O인 (전년도에 유아가 출생하지 않은 경우 등)	622	833.3	858	1071
<b>1 인</b> (유아1 인의 경우 등)	660	875.6	896	1124
2 인 (유아1인+ 수입103만엔 이하의 배우자의 경우 등)	698	917.8	934	1162
3인 (유아2人 + 수입103만엔 이하의 배우자의 경우 등)	736	960	972	1200
4인 (유아3人 + 수입103만엔 이하의 배우자의 경우 등)	774	1002	1010	1238
5人 (유아4인+ 수입103만엔 이하의 배우자의 경우 등)	812	1040	1048	1276

- ※ 부양친족등의 수는, 소득세법상의 동일생계배우자 및 부양 친족 (양부모등에 위탁되어진 아동이나 시설에 입소되어진 아동을 제외합니다.이하, 「부양친족등」라고 합니다.) 또는 부양친족등이 아닌 아동으로 전년도 12월31일에 생계를 유지한 수를 말합니다. 부양친족등의 수에 맞는 한도액 (소득액 기본) 은, 1인에 대해 3 8 만엔 (부양친족등이 동일생계배우자 (7 0세이상인자에 한합니다.) 또는 노인부양친족인 경우에는 4 4 만엔)을 가산한 액수로 됩니다.
- ※ 「수입액의 기준」은, 급여수입만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.어디까지나 기준일 뿐 실제는 급여공제나 의료비공제,잡손공제(특정의 계정과목에 해당하지 않는공제) 등을 공제한후의 소득액으로 소득제한을 확인합니다.

연속되는 다음페이지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!

## (2) 현황서류의 생략에 대하여

ア: 츠쿠바시에서는 2022년부터 현황을 공부(법령규정장부) 등으로 확인하므로, 현황서류의 제출을 원칙불필요로 합니다.

## **※단, 이하의 분은 계속하여 현황서류를 제출이 필요합니다**

- ① 배우자로부터의 폭력등으로 주민표 주소지가 츠쿠바시와 동일하지 않은 분
- ② 츠쿠바시에 호적이나 주민표가 없는 아동을 양육하시는 분
- ③ 이혼 협의중으로 배우자와 별거하고 계신 분
- ④ 법인으로서의 미성년후견인,시설등의 수급자인 분
- ⑤ 그외, 제출의 안내가 있던 분

イ: 이하의 변경사항이 있었던 분은 해당지역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① 아동을 양육하지 않게 된 이유로 지급대상인 아동이 없어진 경우
- ② 수급자나 배우자, 아동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(다른 지역이나 해외로의 전출을 포함)
- ③ 수급자나 배우자, 아동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
- ④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배우자가 생기게 되는 경우, 또는 아동을 양육해 오던 배우자가 없어진 경우
- ⑤ 수급자의 가입연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(수급자가 공무원이 되었을 경우를 포함)
- ⑥ 이혼협의중의 수급자가 이혼을 했을 경우
- ⑦ 국내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으로 해외에 살고 있는 부모로부 터 「부모지정자」의 지정을 받는 경우

#### 공무원인 분에게!!

####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처로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.

이하의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<u>15일이내</u>에 현주소의 시청과 근무처에 신고·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○공무원이 된 경우
- ○퇴직등에 의해 공무원이 아닌 경우
- ○공무원이지만, 근무처의 관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
- <u>※신청이 늦어지면, 원칙적으로 늦어진 기간의 월분의 수당을 받을 수</u> 없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츠쿠바시청 어린이정책과 어린이복지계 (こども政策課 こども福祉係)

電話: 029 (883) 1111